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05

발의연월일: 2024. 12. 9.

발 의 자:김성원·이종배·김선교

고동진 • 박충권 • 서일준

김소희 • 구자근 • 임이자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지급대상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4신설).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 리가 승계된다. 이 경우 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배우자의 수당을 받을 권리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
	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
	이 경우 수당 지급액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